

고 려 씨 엠 연 금 보 헌

코쌔 제 91 - 222 호 ('91. 6. 15) 선고

제무부 생보 22330 - 251 ('91. 7. 22) 변경

제무부 생보 22330 - 115 ('92. 11. 9) 변경

고려씨엠연금보험 보통보험약관

고려씨엠연금보험 보통보험약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때로부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가입시부터 "생존연금지급 개시일 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 "생존연금지급 개시일 부터 종신까지"를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알림이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 (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證明)하는 경우

④ 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제1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나 또는 제2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의 2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원국, 영연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①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4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있는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5조 (계약의 무효) ①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6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제2보험기간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 생존연금(단, 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후 10차년도 이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10차년도까지 매년 생존 연금을 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 60세, 65세, 70세 및 75세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정수축하금
3. 제1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장애분류표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 유족연금
4. 제2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위로금
5. 제1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중 제2급 또는 제3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 보험료 납입 면제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살아 있을 때는 장애분류표중 제1급의 장애상태를 포함합니다.

③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蹤宣告)가 있거나 별표2(장애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 장애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애진단을 기준으로 장애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7조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확정배당금으로 드립니다.

② 회사는 재무부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9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신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시명한 경우는 제외)

㉔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㉕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의 2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 ㉑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이 계약의 납입방법과 수금방법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㉒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12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6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3조 (주소변경통지) ㉑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㉒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㉑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이하 "유예기간(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㉔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다시 교부한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14조의 2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에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약관대출금으로 유예기간중에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를 납입(이하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라 합니다)하야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로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까지의 이자(약관대출이율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③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당해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대출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은 계약자가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이루어 집니다.

제15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정기에금이율 범위내(예정이율이 정기에금이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제외)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1조 제3항, 제2조, 제3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피보험자의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생존연금의 경우)
3.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4. 보험증권
5.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7조 (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6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유족연금, 사망위로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유족연금 또는 사망위로금을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④ 회사는 생존연금 및 장수축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⑤ 생존연금, 장수축하금, 해약환급금 및 제2회 이후에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에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18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7조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정기에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19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또는 수익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9조의 2 (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미만은 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2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제2보험기간 개시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정기에금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1조 (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계약금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제21조의 2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시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2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시지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보험증권의 재교부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재교부등을 해드립니다.

제25조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빈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6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보험가입금액 : 100만원
 피보험자 연령
 55세형 : 36세
 60세형 : 38세
 납입기간 : 전기납
 납입방법 : 월 납

(피보험자 : 남자)

구 분		55 세 형		60 세 형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정액형	1년	58,080	5,640	49,320	0
	3년	174,240	116,860	147,960	86,130
	5년	290,400	252,600	246,600	196,350
	10년	580,800	638,770	493,200	496,040
	15년	871,200	1,175,260	739,800	900,200
체증형	1년	70,200	17,910	56,760	3,730
	3년	210,600	156,640	170,280	110,400
	5년	351,000	324,410	283,800	240,210
	10년	702,000	816,850	567,600	605,340
	15년	1,053,000	1,515,840	851,400	1,110,780

(피보험자 : 여자)

구 분		55 세 형		60 세 형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정액형	1년	61,800	11,320	50,280	0
	3년	185,400	135,810	150,840	98,750
	5년	309,000	288,010	251,400	221,000
	10년	618,000	731,880	502,800	564,810
	15년	927,000	1,352,290	754,200	1,038,870
체증형	1년	77,760	27,420	60,960	10,460
	3년	233,280	187,900	182,880	133,180
	5년	388,800	381,810	304,800	283,020
	10년	777,600	961,870	609,600	717,250
	15년	1,166,400	1,782,920	914,400	1,325,060

(별표 1)

보 험 금 지 급 기 준 표

(기 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급여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생존연금	제 2보험기간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제 1급의 장애상태를 포함합니다)	정액형	매년 계약해당일에 15%씩 지급 (최저 10회 보증 지급)
		체증형	1차년도 15%, 2차년도 이후 매년 1%씩 체증하여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최저 10회 보증 지급) 단, 1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 지급
장 수 축 히 금	피보험자가 60세, 65세, 70세, 75세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제 1급의 장애상태를 포함합니다)		60세 계약해당일 : 10% 지급 65세 계약해당일 : 20% 지급 70세 계약해당일 : 30% 지급 75세 계약해당일 : 40% 지급
유족연금	제 1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제 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0차년도까지 매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20%씩 지급 (10회 확정 지급)
사 망 위 로 금	제 2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10 % 지급
보 험 료 납입면제	제 1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제 2급 또는 제 3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이후 보험료 납입면제

※ 생존연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후 10차년도 이전에 사망한 경우 10차년도까지의 잔여연금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 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경제기획원 고시 제30호, 1979. 1. 1 시행) 중 "손상 및 중독의 외인에 대한 분류"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철도사고	E 800 - E 807
2. 자동차 교통사고	E 810 - E 819
3. 자동차 비교통사고	E 820 - E 825
4. 기타 도로교통기관사고	E 826 - E 829
5. 수상교통기관사고	E 830 - E 838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사고	E 840 - E 845
7. 다른곳에 분류되지 아니한 차량사고 (케이블카, 곤돌라등)	E 846 - E 848
8.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은 제외한다.	E 850 - E 858
9.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한국 표준질병사인 분류상 001내지 799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E 860 - E 869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0.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다만,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	E 870 - E 876
11. 불의의 추락	E 880 - E 888
12.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E 890 - E 899
13.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는 제외한다.	E 900 - E 909 (276.5)
14.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는 제외한다.	E 910 - E 915
15. 기타 불의의 사고 다만,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E 916 - E 928 (E927)
16.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제에 의한 사고	E 930 - E 949
17.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E 960 - E 969
18. 법적개입. 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E 970 - E 978 (E978)
19. 불의인지 고의인지 분명치 않은 상해	E 980 - E 989
20.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E 990 - E 999
21.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장애등급 분류표

등 급	신 체 장 해
제 1 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2 급	1.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등 급	신 체 상 해
	3.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4. 두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제 3 급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 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4 급 (제 2급의 참고 사항임)	1. 두눈의 시력이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정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기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장애등급분류해설>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도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 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 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의 뚜렷한 장애"

시력이 0.06 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 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 (ㅁ, ㅂ, ㅍ), 치설음 (ㄷ, ㅌ, ㄴ),
구개음 (ㄱ, ㅋ), 후두음 (ㅇ, ㆁ)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 (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써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애 "

가. "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써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 (청력검사단위) 로 했을 때 $1/6 (a+2b+2c+d)$ 의 값이 80 데시벨 (청력검사 단위) 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원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 (팔은 어깨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고관절, 무릎, 발목) 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9. "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

가. " 척추의 뚜렷한 기형 "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 "

목뼈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 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0. " 손가락의 장애 "

가. " 손가락을 잃은 것 "

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 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끝에서 둘째 관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손가락의 끝에서 첫째 관절 (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 마디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끝에서 마지막 관절 또는 끝에서 둘째 관절 (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 관절) 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 발가락의 장애 "

가. " 발가락을 잃은 것 "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 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첫째발가락은 끝에서 첫째 마디의 1/2 이상, 그외 발가락은 끝에서 첫째 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끝에서 마지막 관절 또는 끝에서 둘째 관절 (첫째발가락은 끝에서 첫째 관절) 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 (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아깨이하) 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 (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 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애등급분류표중 제 1급의 5,6,7,8,9, 제 2급의 1,2,3 제 3급의 8 또는 제 4급의 12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배우자보장 연금특약 약관

배우자보장 연금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에서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주계약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중피보험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解止)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주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의 장해상태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도 중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④ 이 특약의 체결후에 중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 및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와 "중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이 특약의 체결 후 중피보험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등)으로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중피보험자의 자격을 더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후 제1보험기간중 새로이 제1항의 중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자가 있을 때에는 주계약 제10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승낙한 경우 해당된 날로부터 중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제1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중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배우자보장연금
2.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에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11차년도 이후에 중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배우자보장연금
3. 보험기간중 중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주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 사망위로금
4. 제1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주피보험자 또는 중피보험자가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蹤宣告)가 있거나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장해분류표중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중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는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를 포함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납입 유예기간(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7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종피보험자의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배우자 보장연금의 경우)
3.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4. 보험증권
5.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8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④ 해약환급금 및 제2회 이후에 지급되는 배우자보장연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10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1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제2보험기간 개시전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고부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특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

기준 { 특약가입금액 : 100만원
 주피보험자 연령
 55세형 : 36세
 60세형 : 38세
 납입기간 : 전기납
 납입방법 : 월 납
 부부동시 생존시

(주피보험자 : 남자)

구 분	55 세 형		60 세 형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 년	14,760	470	15,840	840
3 년	44,280	22,680	47,520	23,560
5 년	73,800	48,650	79,200	49,490
10 년	147,600	111,330	158,400	109,470
15 년	221,400	175,320	237,600	166,820

(주피보험자 : 여자)

구 분	55 세 형		60 세 형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 년	7,680	0	8,280	0
3 년	23,040	4,460	24,840	5,540
5 년	38,400	17,130	41,400	18,770
10 년	76,800	42,550	82,800	43,420
15 년	115,200	63,500	124,200	63,050

(별표 1)

보 험 금 지 급 기 준 표

(특약보험가입금액 기준)

급여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배 우 자 보 장 연 금	제1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후 중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10%씩 중신 지급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에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11차년도 이후에 매년 중피보험자가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11차년도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10%씩 중신 지급
사 망 위 로 금	제1보험기간중 중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주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20 % 지급
	제2보험기간중 중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주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10 % 지급

※ 주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는 제1보험기간중은 제1급의 장해상태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2보험기간중은 제1급의 장해상태를 포함합니다.

※ 중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는 제1급의 장해상태를 포함합니다.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경제기획원 고시 제30호, 1979. 1. 1 시행)중 "손상 및 중독의 외인에 대한 분류"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철도사고	E 800 - E 807
2. 자동차 교통사고	E 810 - E 819
3. 자동차 비교통사고	E 820 - E 825
4. 기타 도로교통기관사고	E 826 - E 829
5. 수상교통기관사고	E 830 - E 838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사고	E 840 - E 845
7. 다른곳에 분류되지 아니한 차량사고 (케이블카, 곤돌라등)	E 846 - E 848
8.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외용약 또는 약물 전측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은 제외한다.	E 850 - E 858
9.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한국 표준질병사인 분류상 001내지 799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E 860 - E 869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0.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다만,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	E 870 - E 876
11. 불의의 추락	E 880 - E 888
12.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E 890 - E 899
13.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는 제외한다.	E 900 - E 909 (276.5)
14.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심킴장애는 제외한다.	E 910 - E 915
15. 기타 불의의 사고 다만,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E 916 - E 928 (E927)
16.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제에 의한 사고	E 930 - E 949
17.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E 960 - E 969
18. 법적개입. 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E 970 - E 978 (E978)
19. 불의인지 고의인지 분명치 않은 상해	E 980 - E 989
20.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E 990 - E 999
21.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별표 3)

장애등급 분류표

등 급	신 체 장 해
제 1 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애등급분류해설>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 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시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 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 (ㅁ, ㅂ, ㅍ), 치설음 (ㄷ, ㅌ, ㅊ),
구개음 (ㄱ, ㅋ), 후두음 (ㅇ, ㆁ)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 (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써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 (팔은 어깨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 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